

**제4차 관광개발기본 수정계획(안) 2027~2031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평 가 항 목 등 의 결 정 내 용)**

2026. 10.

제 1 장

계획의 개요

-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성격
- 1.2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실시근거
- 1.3 계획의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1.4 계획의 내용
- 1.5 계획의 기대효과
- 1.6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27~2031) 수정계획(안)
수정내용

제1장 계획의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성격

1.1.1 계획의 배경

-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재검토 및 정비를 위한 시기 도래
 - 관광개발기본계획은 「관광진흥법」 제49조에 의거하여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며, 2020년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제42조 제2항 신설)으로 5년마다 재검토 및 정비 필요
 - 2021년 말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수립 이후 5년이 경과하여 재검토 및 정비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의 비전을 넘어 관광 발전과 국민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 및 지역의 관광개발 방향 지향
- 변화하는 관광 환경에 대응한 국가 관광개발계획 수립
 -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계획기간 동안 국내·외 여건 변화와 시대상을 반영하여 국가 및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새로운 관광개발기본계획 방향 모색
 - 인구구조,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혁신적 국가 관광개발 전략과 국민 삶의 질과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관광발전 전략 제시
 - 국제 정세의 변화를 파악하여 국제관광의 흐름을 선도할 수 있는 국가 관광개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관광경쟁력 제고
- 제8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과 연계
 - 기본계획의 구체화 계획, 권역 특성화 계획, 관광(단)지 지정 근거계획의 성격을 갖는 제8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2027~2031년)이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과 동일한 시기에 수립되어 상호 연계·협력적 계획 수립 필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기본계획의 재검토 및 정비
(제4차 수정계획 수립)**

⇒ 국가 관광개발 위상을 정립하는 종합계획, 과학적 증거기반 정책계획, 이해관계자의 연계협력에 기반한 협력계획으로 변화된 관광환경에 맞는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

1.1.2 계획의 목적

-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관광경쟁력 제고
 - 계획기간 동안 인구구조, 생활양식, 가치관, 지역 및 국제관계 등에서 예상되는 변화를 전망하고 이에 대응한 국가 및 지역 관광개발 방향을 모색하여 국가관광경쟁력 제고
- 사람과 지역 중심의 국가관광개발 비전 제시
 - 「관광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적 내용적 범위를 기준으로 사람(관광객)과 지역(관광목적지) 중심의 관광개발 비전 제시
- 중기 관광개발 기본방향을 제시
 -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관광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국민 삶의 질과 지역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전국 관광개발 기본방향을 제시
- 국가단위 법정관광계획으로서 위상 재정립
 - 관광개발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서 타 분야 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관광개발과 지역관광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국가단위 관광계획의 위상 재정립

1.1.3 계획의 성격

- 행정계획 및 법정계획
 - 관광개발기본계획은 「관광진흥법」 제49조에 근거하며 관광개발기본계획 재검토 및 정비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근거하여 국가관광개발의 위상을 정하고 있는 법정 계획이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립하여 발표하는 행정계획
 -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적 범위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계획이 취할 수 있는 정책영역에 한정된 계획
- 미래지향적 종합계획
 - 과학적 증거에 기반 하여 5년 후 국가 관광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미래지향적 종합계획이며 미래를 전망하고, 계획 목표와 지향점은 무엇인가를 규정
 - 관광개발의 주요 요소인 관광자원, 시장(관광객), 관광개발 주체(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등)의 영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 이용, 보호, 관리를 포괄하여 전략 제시

1.2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실시근거

1.2.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계획은 「관광진흥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수립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관련 [별표2]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정책계획)에 해당됨

〈표 1-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1. 정책계획		
구 분	정책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마. 관광단지의 개발	1) 「관광진흥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관광진흥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는 때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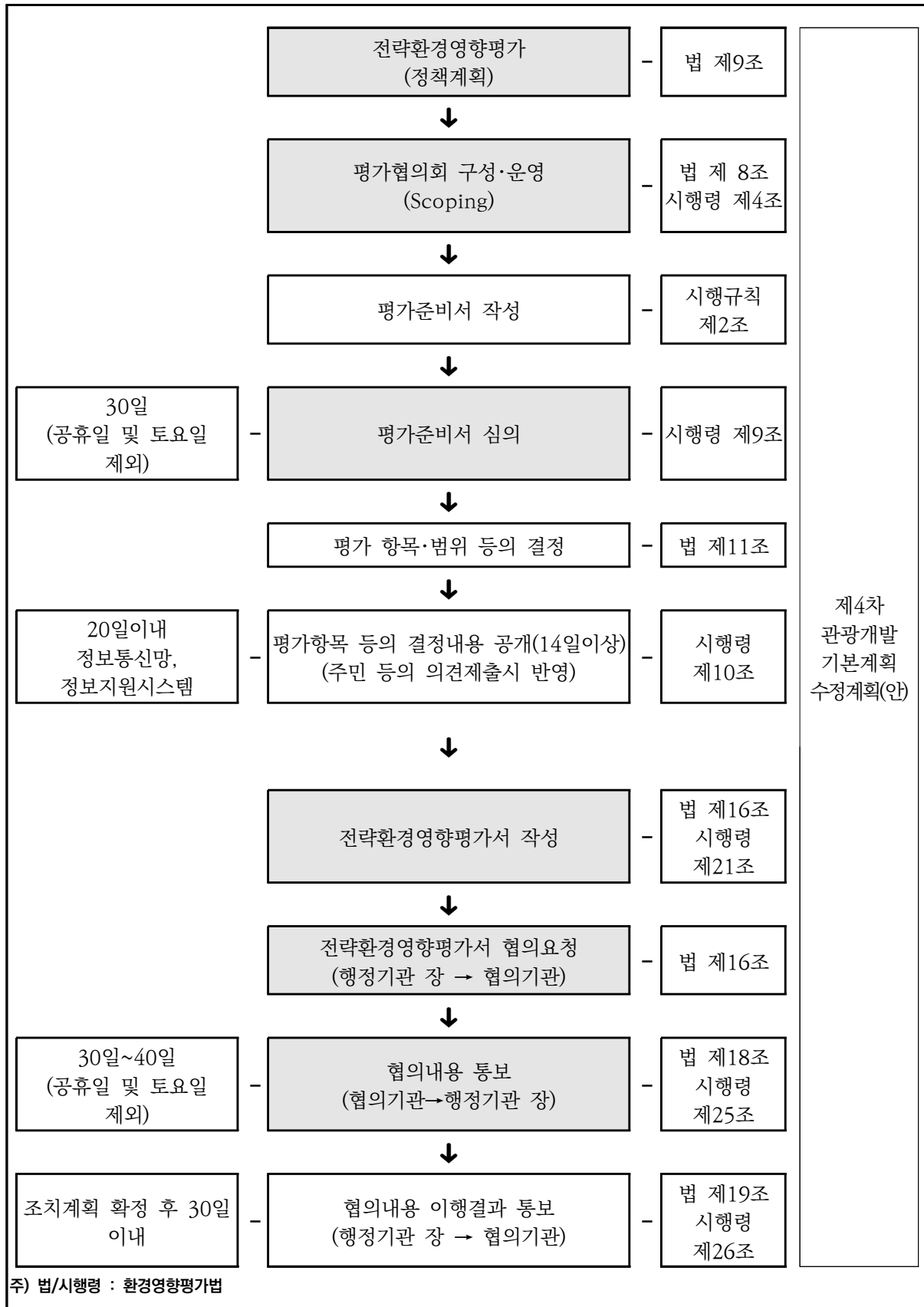
1.2.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근거

- 본 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하고자 함

〈표 1-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실시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u>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u>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사업계획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 토지이용구상안 3. 대안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후략)

1.2.3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 행정절차



1.3 계획의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1.3.1 추진경위

- '21. 12. 02. :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22~2031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 '21. 12. 30. :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22~2031년) 확정·발표
- '26. 3. 23. :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재검토 및 정비 연구 용역 계약 체결
- '26. 4. 22. : 관광트렌드 분석을 위한 워크숍
- '26. 6. 15. : 관광수요 지자체 송부
- '26. 7. 5. : 제4차 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단 구성
- '26. 7. ~ 8.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1~5차)
- '26. 9.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심의(서면심의)

1.3.2 향후계획

- '26. 10. : 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 '26. 10. ~ 11.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출 및 협의요청
- '26. 11.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보고
- '26. 12. : 의견 및 조치사항 반영
- '26. 12. :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2027~2031)」 공고

1.4 계획의 내용

- 계 획 명 :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안) 2027~2031
-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27년~2031년(5년)
 - 공간적 범위 : 전국(한반도)
- 내용적 범위
 - 「관광진흥법」 제49조에 의거하여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수립된 제4차 기본계획을 검토하여 변화된 관광 여건과 동향, 관광수요와 공급, 기본계획의 이행 점검, 수정된 전략 및 세부 과제 도출, 관광권역 설정 등을 포함
- 계획수립기관(수립권자) : 문화체육관광부
- 협의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표 1-3〉 계획의 내용적 세부 범위

구 분	범 위
비 전 편	- 관광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의 역할 - 여건 및 동향 분석, 수요 및 공급분석 -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이행점검 - 수정계획의 비전 및 목표 제시
전 략 과 제 편	- 전략 설정, 전략별 추진 과제와 세부 과제 도출
권 역 편	- 권역 설정, 시·도 권역별 관광개발 방향

1.4.1 계획의 방향

가. 관광개발 정책방향의 전환

(1) 공급·시설 중심에서 관광수요와 지역가치 중심으로 전환

- 성공적인 관광개발은 변화하는 관광수요와 지역 고유자원의 가치가 조화를 이루고, 다양한 추진주체가 관광자원의 매력성과 지속가능성을 유지·제고함으로써 관광객의 만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관광개발
- 관광자원의 보유와 시설 조성을 중심으로 한 공급자 관점에서 벗어나 관광객의 이동·체류·소비행태와 경험 가치를 반영하고, 지역주민의 삶과 지역의 환경·사회문화적 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관광개발 고도화
- 관광자원·관광시장·추진주체 간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관광객의 요구와 지역사회의 필요를 조화롭게 반영하고, 개발·이용·보호·관리가 균형 있게 이루어지는 관광개발 추진
- 관광객의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관광 활동이 지역주민의 삶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관광객과 지역사회가 관광개발의 편익을 함께 향유하는 관계 형성

(2) 신규 조성 중심에서 관광자원의 전 주기적 활용과 관리 강화

-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등 기존 관광개발 정책수단은 국가와 지역의 관광기반 확충에 기여해 왔으나, 일부 사업은 수요 변화에 대한 대응 부족, 시설 노후화, 운영주체와 재원 미확보 등으로 조성 이후 지속적인 운영과 성과 창출에 한계
- 신규 관광시설의 확충에 치중하기보다 기존 관광자원의 활용도와 운영 성과를 높이고, 필요한 경우 재생·재구조화하여 변화하는 관광수요와 지역 여건에 대응하는 관광개발 강화

- 관광자원의 매력은 자원 자체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접근성과 편의성, 콘텐츠와 서비스의 품질, 안전성, 운영·관리 수준 및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경험 가치에 의해 결정되므로 개발·이용·보호·관리를 통합적으로 추진
- 신규 시설 조성 시에는 계획 수립 단계부터 관광수요와 사업 타당성, 운영 주체와 운영 비용, 수익 구조 및 성과관리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성 이후의 지속가능성과 운영 성과 확보
- 기존 관광자원의 재생과 활용, 운영 역량 강화와 지속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관광개발의 질적 수준과 공공투자의 효율성 제고

(3) 양적 확대와 질적 성과가 조화를 이루는 관광개발 추구

- 기존 관광개발정책은 증가하는 관광수요에 대응하여 관광시설과 수용 기반을 확충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일부 사업은 관광수요와 지역 여건 및 환경적·사회적·문화적 수용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여 유사·중복 개발, 지역사회에 대한 부담 증가, 조성 이후 운영 부실 등 문제 발생
- 향후 관광개발은 관광객 수와 시설 개소수 등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체류와 소비, 관광 만족도, 지역 일자리와 주민 소득, 지역주민의 삶의 질 등 질적 성과를 함께 추구
- 외래관광객 유치와 국내 관광수요 확대가 지역 내 이동·체류·소비로 연결되고, 관광으로 창출된 다양한 편익이 지역사회에 확산·환류되도록 관광개발의 지역 파급효과 강화
- 지역의 환경적·사회적·문화적 수용력을 고려하여 관광객과 관광공간의 시기별·지역별 편중을 완화하고, 관광객 만족도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함께 높이는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 추진
- 관광자원의 가치 제고와 관광객의 체류·소비 확대, 지역 편익의 창출과 환류, 관광자원에 대한 재투자로 이어지는 지역관광의 선순환 구조 구축

나.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의 관광개발 개념

(1)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리를 포괄하는 전 주기적 과정

- 「관광진흥법」에서 관광개발기본계획 목적을 ‘전국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 관리를 위함’으로 명시하고, 이러한 근거에 의거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지역의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는 주체로서 역할 수행

- 기존 관광개발은 공공 재원을 투입하여 관광시설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양적으로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어 왔으며, 관광자원의 운영과 유지관리, 기존 자원의 활용 및 가치 제고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실행은 상대적으로 부족
- 관광자원 관리는 개발 이후의 유지관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광자원의 발굴과 계획 수립부터 조성, 운영·관리, 성과평가 및 재투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자원의 가치와 이용 성과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정책 영역
- 향후 관광개발은 신규 관광자원 조성 and 기존 관광자원의 활용·재생을 균형 있게 추진하고, 지역의 여건과 수용력, 관광객의 이용 행태를 고려하여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리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고도화 필요
- 수정계획에서는 관광개발을 지역 고유자원과 관광수요를 토대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관광자원의 개발·이용·보호·관리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그 편익이 지역과 관광객에게 확산되어 관광자원의 가치 제고와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과정으로 접근

(2) 개발, 이용, 보호, 관리를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 강화

- 관광자원 개발은 지역 고유자원을 발굴하고 새로운 관광자원을 조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자원의 관광적 가치와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을 포괄
- 관광자원 이용은 관광객이 관광자원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여 체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자원의 특성과 수용력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활용하는 방식
- 관광자원 보호는 자연·문화·생활자원의 고유한 가치를 보전하고 미래세대에 전승하는 동시에 주민의 삶과 조화를 이루고 관광 활동으로 인한 환경·사회·문화적 영향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방식
- 관광자원 관리는 관광자원의 발굴·개발 이후 운영, 유지관리, 안전관리, 성과평가와 재투자까지 포괄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조직·제도·인력·재원 등의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방식
- 관광자원의 개발·이용·보호·관리는 서로 독립적이거나 배타적인 영역이 아니라 관광 자원의 효율적 개발과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상호보완적 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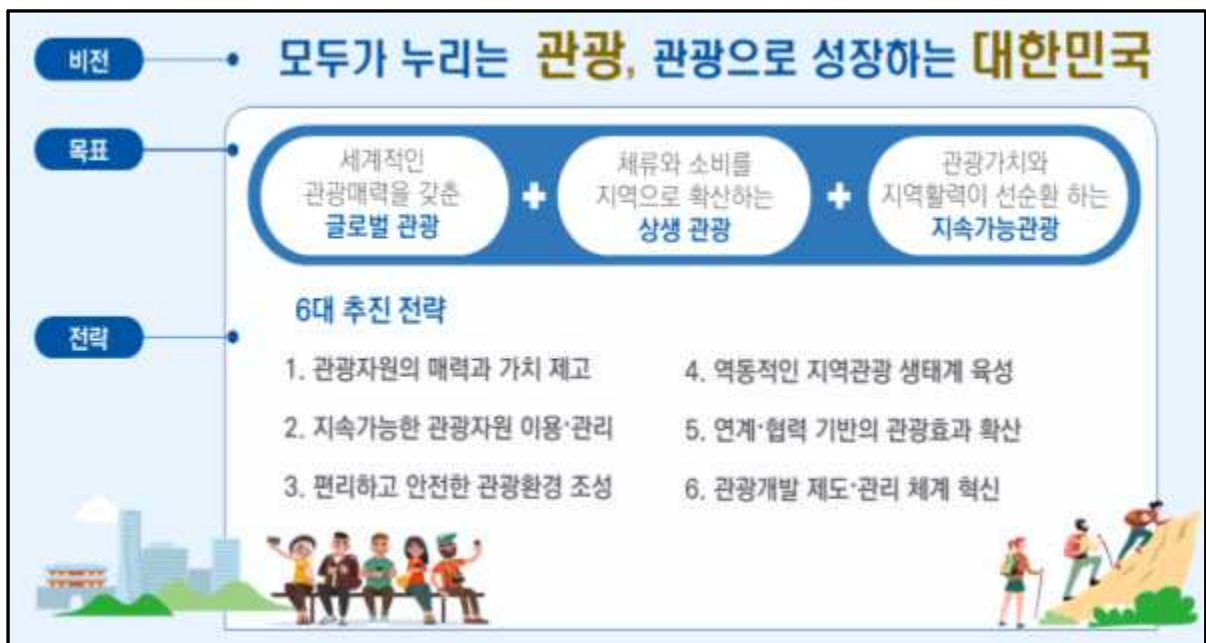
1.4.2 비전 및 목표

가. 비전

- ‘모두가 누리는 관광’은 국민과 지역주민, 국내외 관광객, 현재와 미래세대가 관광의 기회와 경험, 관광개발로 창출되는 편익을 함께 향유하는 것을 의미
- 단순히 누구나 여행할 수 있다는 포용적 의미를 넘어, 관광객은 좋은 관광경험을 누리고, 지역주민은 관광으로 창출되는 편익을 누리며, 미래세대는 보전된 관광자원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관광개발 지향

관광 향유의 포용성 + 국민 체감 + 지역 간 격차 완화 + 지속가능성

- ‘관광으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은 관광객 수나 산업 규모의 성장에 한정되지 않고, 관광자원의 가치, 관광시장, 지역산업과 일자리, 지역 역량이 함께 성장하는 것을 의미
- 관광자원의 가치 제고와 글로벌 관광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과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 실현, 2031년에는 국민과 지역주민, 국내외 관광객, 현재와 미래세대가 관광의 기회와 편익을 함께 누리고, 관광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여 지역과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 실현, 기존 계획의 ‘관광으로 행복한 국민’을 계승하면서도 대상을 지역 주민·외래관광객·미래세대까지 확장



(그림 1-1) 기본가치 및 비전

나. 계획 목표

(1) 세계적 관광매력을 갖춘 글로벌 관광

- K-컬처에 대한 국제적 관심 확대와 국가 간 관광객 유치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관광자원과 관광경험을 세계인이 선택하고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고
- 글로벌 관광은 외래관광객 수의 양적 확대에 한정되지 않으며, 지역 고유자원의 매력과 차별성, 콘텐츠와 서비스의 품질, 접근성과 편의성, 안전성 등 관광 경험 전반의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의미
- 자연·문화자원뿐만 아니라 지역의 생활 문화와 산업, 음식, 예술, 경관 등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발굴하고, K-컬처 및 첨단기술과 결합하여 세계적인 관광매력을 갖춘 자원과 콘텐츠로 발전
- 신규 관광자원의 발굴·조성과 함께 기존 관광자원의 활용과 재생, 운영·관리 수준을 높여 세계인이 방문하고 만족하며 재방문을 고려하는 경쟁력 있는 관광 환경 조성
- 이에 기반하여 지역 고유성과 한국적 매력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관광경험을 제공하고, 대한민국 관광의 국제적 위상과 관광 경쟁력 제고

(2) 체류와 소비를 지역으로 확산하는 상생관광

- 관광객 수의 증가가 일부 지역과 관광지의 방문에 그치지 않고, 여러 지역으로의 이동과 장기 체류 및 지역 내 소비로 연결되도록 관광시장의 질적 변화를 유도
- 상생관광은 관광객에게 매력적이고 편리한 관광 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관광객의 체류와 소비가 지역의 상권·산업·일자리와 연결되어 관광객과 지역이 관광의 편익을 함께 누리는 것을 의미
- 수도권과 일부 유명 관광지에 집중된 관광수요를 지역으로 분산하고, 관광거점과 주변 지역, 도시와 농산어촌, 지역 간 관광자원과 동선을 연계하여 관광객의 이동범위와 체류시간 확대
- 단순 방문과 관람 중심의 관광에서 벗어나 숙박, 음식, 쇼핑, 문화·예술, 야간관광, 웰니스 등 지역의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경험하는 체류·소비형 관광 활성화
- 관광객의 이동·체류·소비행태를 분석하여 관광교통, 관광정보, 결제, 안전, 여행 전 과정의 편익을 개선하고, 관광수요가 지역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 조성
- 이를 토대로 관광객의 만족과 지역의 관광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함께 높이고, 관광 수요의 지역 편중 완화와 지역 균형성장에 기여

(3) 관광가치와 지역 활력이 선순환 하는 지속가능관광

- 관광개발이 단편적 시설 조성과 관광객 유치에 그치지 않고, 관광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개발·이용·보호·관리하고 관광으로 창출된 편익을 지역에 환류하여 관광자원의 가치 보전과 지역 활력이 서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 형성
- 지속가능관광은 지역의 환경적·사회적·문화적 수용력을 고려하여 관광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이용·보호·관리하고, 그 가치를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가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의미
- 관광가치는 관광자원의 매력과 보전가치뿐만 아니라 관광을 통해 창출되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편익, 관광객의 경험가치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포괄
-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민간기업, 지역관광조직 등 다양한 주체가 관광개발의 계획·조성·운영·관리 과정에 참여하고, 각 주체의 역할과 책임에 기반한 지역주도 관광개발 체계 구축
- 관광으로 창출된 소득과 일자리 등 편익이 지역사회에 확산되고, 다시 관광자원의 보전·관리, 콘텐츠와 서비스 개선, 지역역량 강화에 재투자되는 환류구조 마련
- 기후변화와 오버투어리즘, 관광시설 노후화 및 운영 부실 등에 대응하여 관광자원의 개발·이용·보호·관리를 균형 있게 추진하고, 관광개발사업의 전 과정에 대한 관리와 성과평가 강화
- 이를 통하여 관광자원의 가치 제고가 지역 활력을 높이고, 높아진 지역 활력이 다시 관광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가치 향상으로 이어지는 관광개발의 선순환 실현

1.4.3 전략 도출 방향 및 추진전략

가. 전략 도출 방향

(1) 제4차 기본계획의 6대 전략체계 계승과 정책 환경 변화 대응

-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의 추진 전략은 자원·시장·주체라는 정책영역, 개발·이용·보호·관리라는 관광개발의 기능, 입체적·스마트·지속가능·합리적이라는 방향성을 토대로 6대 전략 도출
- 기존 계획에서 제시한 6대 전략체계는 관광자원, 관광환경, 지역 및 주체, 연계·협력, 제도·관리 등 관광개발의 핵심 정책영역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수정계획에서도 기본적인 전략 틀 유지
- 다만 코로나19 이후 관광시장 변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관광수요의 다변화, 지역 간 연계·협력 확대 등 2022년 이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수정계획의 비전 및 목표 달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략별 정책방향과 추진내용 재구조화

(2) 수정계획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의 성과지향성 강화

- 수정계획의 비전인 ‘모두가 누리는 관광, 관광으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전략체계의 상위 지향으로 설정하고, 관광의 향유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관광이 지역과 국가의 성장에 기여하도록 전략의 정책적 지향 명확화
- 세계적 관광매력을 갖춘 글로벌 관광, 체류와 소비를 지역으로 확산하는 상생관광, 관광가치와 지역 활력이 선순환 하는 지속가능관광의 3대 목표를 6대 전략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핵심 성과로 설정
- 관광자원의 공급과 개발 자체보다 세계적 관광매력의 창출, 관광 향유기회의 확대, 체류와 소비의 지역 확산, 관광가치와 지역 활력의 지속가능한 선순환 등 전략 추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를 중심으로 전략별 방향 재설정

(3) 관광개발 정책영역의 확장과 유기적 연계

- 관광자원의 개발과 확충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관광개발 영역을 넘어 관광자원의 매력과 가치, 지속가능한 이용·관리, 편리하고 안전한 관광환경, 지역관광 생태계, 지역·부문 간 연계·협력, 제도·관리체계까지 관광개발의 정책영역 확장
- 개별 관광자원이나 시설 중심의 개발에서 나아가 관광객의 이동·체류·소비, 지역주민과 관광사업자 등 지역주체, 지역산업 및 지역 간 관계까지 포괄함으로써 관광자원과 관광환경, 지역주체와 산업, 공간 간 관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관광개발체제로 확장
- ‘자원 발굴-기반 확충-체계 구축’ 중심의 전략에서 ‘가치 제고-지속가능한 이용·관리-지역효과 확산-제도 혁신’ 중심의 전략으로 고도화

(4) 개발·이용·보호·관리의 균형에서 관광가치와 지역 활력의 선순환으로

- 「관광진흥법」에서 제시하는 관광자원의 개발·이용·보호·관리라는 관광개발의 기본 기능을 균형 있게 반영하되, 관광자원의 신규 공급과 개발 중심에서 기존 자원의 가치 제고와 지속가능한 이용·관리까지 관광개발의 기능 강화
- 관광자원의 개발 성과가 개별 관광지에 머무르지 않고 관광객의 향유와 체류·소비 확대를 거쳐 지역경제와 지역사회에 파급되고, 이를 통해 형성된 지역 활력이 다시 관광자원의 매력과 가치를 높이는 선순환적 관광개발체계 지향
- 이를 통해 관광매력 제고, 관광 향유 및 체류 확대, 지역 내 소비와 효과 확산, 지역 활력 제고, 관광가치 재창출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구현

나. 6대 전략(수정·보완)

(1) 전략 1. 관광자원의 매력과 가치 제고

- 관광수요와 기술·산업 변화에 대응하여 관광자원의 영역과 활용 방식을 확장하고, 지역 고유자원의 재발견과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해 차별화된 관광매력 강화
- 신규 관광자원 발굴 중심에서 기존 자원의 재해석 및 고도화와 콘텐츠 융복합으로 관광 자원의 질적 가치를 높여 세계적 수준의 관광경쟁력 확보

(2) 전략 2.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이용·관리

-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성 요구에 대응하여 관광자원의 환경적·사회적 가치를 보전하면서 지속가능한 활용 확산
- 노후·유휴 관광자원의 재생과 관광객 집중 등 관광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관광자원과 지역사회의 회복력 강화

(3) 전략 3. 편리하고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

- 관광객의 이동·체류·관광활동 전 과정에서 교통·안내·정보·서비스의 연결성과 편의성을 높여 관광 만족도를 제고하고 원활한 관광활동을 지원하는 관광환경 조성
- 관광약자를 포함한 모든 관광객의 관광 접근성과 안전을 강화하고, 투명한 가격과 신뢰할 수 있는 관광서비스를 확산하여 안심하고 누리는 관광여건 마련

(4) 전략 4. 역동적인 지역관광 생태계 육성

- 주민·지역기업·관광사업자 등 다양한 지역주체의 참여와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자원·산업과 관광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지역관광 가치 창출
- 관광개발의 성과가 지역의 사업·일자리·소득 등 지역 활력으로 이어지는 자생적 관광 생태계 육성

(5) 전략 5. 연계·협력 기반의 관광효과 확산

- 행정구역과 개별 관광지의 경계를 넘어 지역·관광자원·산업 간 연계와 다양한 주체 간 협력을 통해 관광공간과 관광경험의 범위 확장
- 광역·초광역 관광 연계와 지역 간 역할 분담을 통해 관광객의 이동·체류·소비를 지역으로 확산하고 관광개발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제고, 관광자원 영역 확장으로 다양한 신규 관광자원 창출

(6) 전략 6. 관광개발 제도·관리체계 혁신

- 관광개발 환경과 정책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광개발 관련 계획·제도와 추진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정책 실행력 강화
- 관광자원의 개발·이용·보호·관리를 전 주기적으로 고려하고 계획부터 사업 추진·운영·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관광개발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제고

1.4.4 권역별 전략 및 추진계획

가. 수도권

(1) 관광권역 목표

- K-컬처를 세계와 지역으로 잇는 대한민국 관광관문

(2) 발전 방향

- 글로벌 관문과 K-컬처를 연계한 대한민국 대표 관광허브 구축
- K-컬처와 고부가 관광산업을 결합한 글로벌 관광경쟁력 강화
- 도시·해양·수변·평화생태자원을 연계한 다핵형 체류관광지대 조성
- 초연결·포용·상생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수도권 관광생태계 구축

(3) 시·도별 전략

(가) 서울

- 서울다운 관광경험을 관광소비와 고부가가치로 연결
- 관광경험의 시간적 확장으로 365일 즐거운 관광도시 구현
-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경험하는 관광환경 조성
- 관광성과를 지역과 공유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생태계 구축

(나) 인천

- 신관광 수요 대응형 차별적 매력 강화
- 경쟁력 있는 관광명소 확충·고도화
- 권역별 관광특화와 균형발전
- 글로벌 수준의 관광환경 조성
- 인천관광 고도화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

(다) 경기

- 경기로컬여행(G-Local)기반 및 거점 확충
- 경기로컬여행(G-Local) 고도화
- 경기형 특화 관광거점 육성 및 브랜드화
- 고부가 관광거점 및 상품 육성
- 경기관광 글로벌 인지도 제고
- 교통·라이프스타일 경계 없는 포용 관광환경 구축
- 데이터·AI·협력 기반 시공간 경계 없는 혁신 관광생태계 구축

나. 중부권

(1) 관광권역 목표

- 과학·문화와 내륙·서해를 잇는 대한민국 관광중심축

(2) 발전 방향

- 해양과 내륙의 자연자원을 연결한 광역 치유·휴양관광지대 조성
- 역사문화·과학·행정도시 자원을 융합한 중부권 특화 관광콘텐츠 육성
- 광역교통망과 핵심 관광거점을 활용한 초연결 체류관광권 구축
- 로컬관광과 야간경제를 기반으로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관광생태계 조성

(3) 시·도별 전략

(가) 대전

- 지역문화 기반 로컬관광 고도화, 도시 경험 기반 체류형·야간경제관광 거점화
- 권역별·소권별 관광거점자원 개발 및 관광공간 활성화
- 지역관광 생태계 및 경쟁력 강화

(나) 세종

- 관광 거점 명소화를 통한 관광벨트 구축 기반 마련
- 상반된 매력이 공존하는 세종시 특화 콘텐츠 개발
- 체류형 관광 및 야간 경제관광 기반 구축
- 무장애 관광 및 관광수용태세 개선

(다) 충북

- [SPACE] 고품격 체류 인프라 및 거점 현대화
- [CONTENTS] 내륙의 바다·백두대간, K-자연 콘텐츠 확충
- [HUMAN] 로컬 활력 증진 및 글로벌 교류 활성화
- [PLATFORM] 관광 생태계 고도화 및 미래 성장 기반

(라) 충남

- 글로벌 해양레저생태관광 거점화
- 오감 힐링 휴양관광 특화
- 체류형 휴양관광 기반 마련
- 지속가능 융복합 관광콘텐츠 개발
- 관광환경·편의 기반 및 관광수용태세 개선

다. 서남권

(1) 관광권역 목표

- 자연 속에 의향·예향·미향으로 머무는 글로벌 관광특별시

(2) 발전 방향

- 지역 고유자원의 고부가 융복합관광 전환
- 체류형 관광을 위한 관광동선 연계 및 관광기반·수용태세 강화
- 국제 관광 확대와 목적지 브랜드 경쟁력 강화
- 지역별 거점 특화와 광역 관광동선 연계
-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생태계와 통합 운영기반 구축

(3) 시·도별 전략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공통) 지역 고유자원의 고부가 관광콘텐츠화 및 융복합관광 전환
- (공통) 체류형 관광을 위한 관광기반·수용태세 강화
- (공통) 국내외 관광시장 확대와 목적지 브랜드 경쟁력 강화
- (광주)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관광환경 구축
- (전남) 관문 기능 강화로 지역별 거점 특화와 광역 관광동선 연계
- (전남)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생태계와 통합 운영기반 구축

라. 대경권

(1) 관광권역 목표

- 천년의 유산과 미래혁신을 잇는 글로벌 관광 중심

(2) 발전 방향

- 천년 역사문화를 연결하는 K-헤리티지 관광루트 구축
- 대구의 도시관광 기능을 활용한 경북 체류관광 확산
- 천년유산에 미래기술을 더한 혁신관광 콘텐츠 육성
- 관광성과가 지역 전반으로 확산되는 균형성장 기반 마련

(3) 시·도별 전략

(가) 대구

- 체류형 관광·고부가가치 관광 육성
- 대구 특화 K-컬처·랜드마크로 관광도시 인지도 제고
- 도심과 자연을 연결한 취향 맞춤 관광 구현
- 초광역 연결과 공항 기반 관광시장 확장
- 신기술 활용·환경 대응 강화로 지속가능한 미래 관광생태계 구축

(나) 경북

- 글로벌 스탠더드 K-관광 허브 구축,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계 조성
- 지역 주도 맞춤형 관광 개발,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 확충

마. 동남권

(1) 관광권역 목표

- 세계로 열린 해양·산업·생태 융합관광 중심

(2) 발전 방향

- 국제관문과 지역거점을 연결하는 초광역 관광생활권 구축
- 해양·산업·생태·K-컬처 융합관광 경쟁력 강화
- 스마트·데이터 기반의 통합 관광목적지 조성
- 체류경제와 지역가치가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관광권 육성

(3) 시·도별 전략

(가) 부산

-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누리는 공존형 도시 관광, 머무름과 소비가 확대되는 체류경제형 관광
- 바다·도시·자연이 연결되는 입체형 관광
- 광역연계·AI 기반의 미래형 관광

(나) 울산

- (편리한 관광) 관광 이동을 연결하는 스마트·무장벽 관광환경 구축
- (함께하는 관광) 관광가치가 지역에 환류되는 로컬 관광경제 구축
- (지속가능한 관광) 보전과 성장이 공존하는 재생형 관광도시 구축
- (잇는 관광) 핵심 관광자원을 연결하는 통합 관광목적지 구축
- (머무는 관광) 체류시간과 소비를 확대하는 체류경제형 관광도시 구축
- (견인하는 관광) 복합관광거점 중심의 관광수요·투자 견인 기반 구축

(다) 경남

- 글로벌 관문 연계 세계 수준의 관광인프라·콘텐츠 경쟁력 강화
- 경남형 관광매력 고도화를 통한 글로벌 브랜드 가치 제고
- 여행에서 생활로 이어지는 경남형 체류관광 활성화
- 관광소비의 지역 내 순환을 통한 도민 체감형 경제효과 확대

바. 강원권

(1) 관광권역 목표

- 다양한 강원다움으로 글로벌 관광도시 도약

(2) 발전 방향

- 강원형 생태관광 힐링 브랜드 구축,
- 기존 관광자원·로컬감성의 활용 및 고도화
- 융복합형 관광생태계 구축 및 연계·협력체계 구축
- 글로벌 체류형 복합관광지 조성 및 콘텐츠 발굴, 지속가능한 관광환경 구축

사. 전북권

(1) 관광권역 목표

- 전북의 맛과 씬, 세계가 찾는 전북관광

(2) 발전 방향

- 세계가 찾는 전북관광 기반 구축
- 맛·씬·문화 관광콘텐츠 고도화
- 전북형 로컬관광 자원 브랜드화
- 체류·재방문 관광상품 개발
- 지속가능·편리한 관광수용태세 확립

아. 제주권

(1) 관광권역 목표

- 도민과 여행자 모두가 행복한 글로컬 여행지 제주

(2) 발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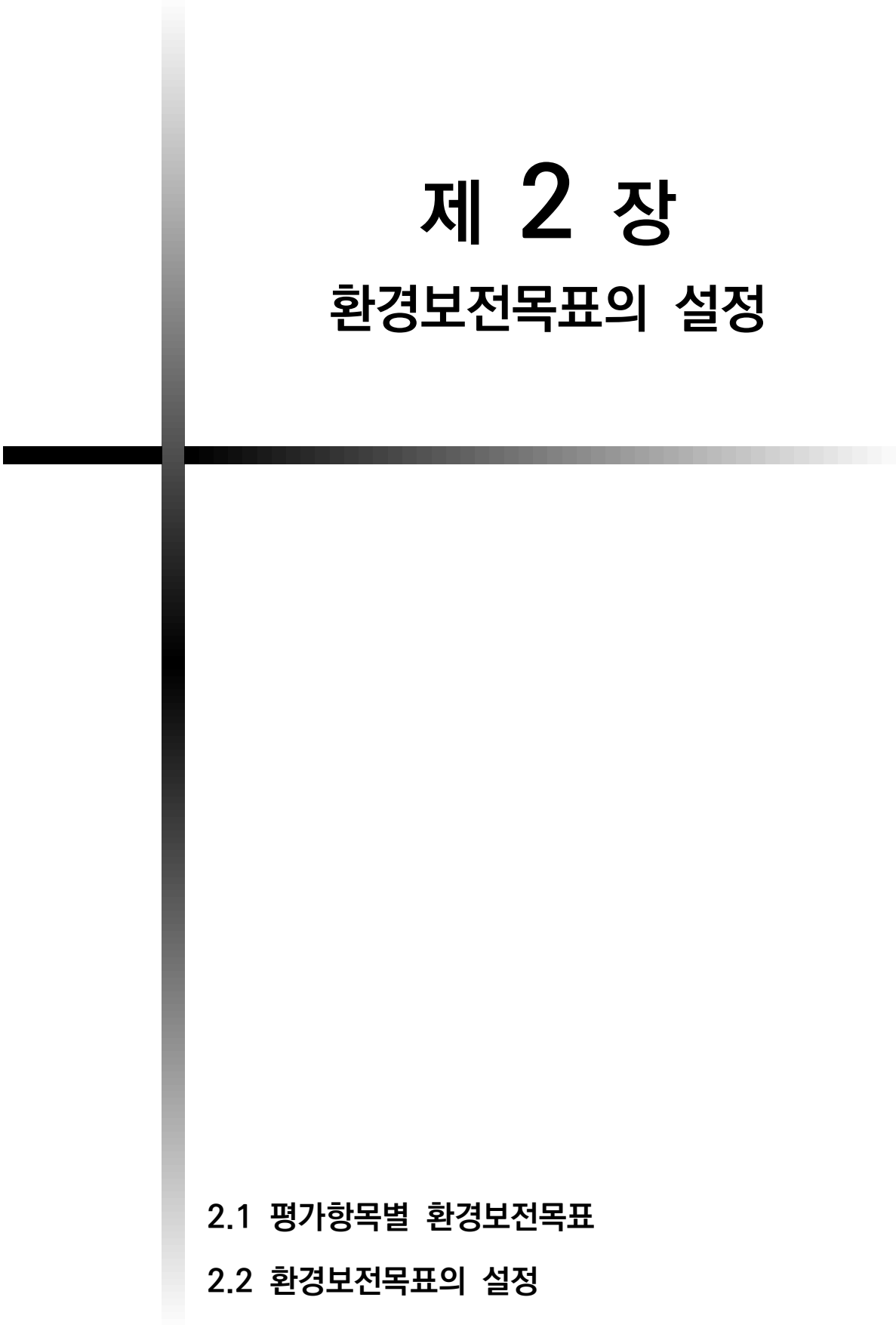
- 책임관광 육성으로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과 지속가능성 강화
- 치유와 함께하는 지역관광체계 확립으로 새로운 관광산업생태계로 도약
- 청정이미지를 담은 지역고유자산을 활용한 특화관광 육성
- 참여와 공존을 통한 지역관광 혁신역량 제고

1.5 계획의 기대효과

- 국가 및 지역의 국제경쟁력 강화
 - 전국 관광자원의 보호·이용·개발·관리를 통하여 관광유인력 및 관광만족도를 제고시킴으로써 주변국들과의 관광자원 및 시설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함
- 국내·외 관광객 수용태세 확충을 통한 관광기회 확대
 - 국민관광 및 외래관광객 등 미래에 증가할 관광수요에 대비하여 서비스 및 공간의 질적 활용을 통한 관광수용능력을 확충함으로써 관광기회를 확대함
- 관광개발정책 추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및 경제에 기여
 - 지역 편의시설의 확대, 지역 고용기회의 증가, 주민의 참여 활성화, 관광개발의 지역협력 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지역간 균형적 개발 및 지역 경제에 기여함
- 미래 국토 공간에 대한 계획적 관리
 - 제8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부처별 개발계획을 관광개발 측면에서 통합·조정하여 체계적인 국토 이용정책에 기여함

1.6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27~2031) 수정계획(안) 수정내용

구 분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22~2031)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27~2031) 수정계획(안)
범 위	2022~2031	2027~2031
비 전	미래를 여는 관광한국, 관광으로 행복한 국민	모두가 누리는 관광, 관광으로 성장하는 대한민국
목 표	• 사람과 지역이 동반 성장하는 상생관광 • 질적 발전을 추구하는 스마트·혁신관광 • 미래세대와 공존하는 지속가능관광	• 세계적 관광매력을 갖춘 글로벌 관광 • 체류와 소비를 지역으로 확산하는 상생관광 • 관광가치와 지역 활력이 선순환하는 지속가능관광
전략 및 과제	• 6대 전략 -전략 1. 매력적 관광자원 발굴 -전략 2. 지속가능 관광개발 가치 구현 -전략 3. 편리한 관광편의 기반 확충 -전략 4. 건강한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 -전략 5. 입체적 관광연계 협력 강화 -전략 6. 혁신적 제도 관리 기반 마련	• 6대 전략 -전략 1. 관광자원의 매력과 가치 제고 -전략 2.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이용·관리 -전략 3. 편리하고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 -전략 4. 역동적인 지역관광 생태계 육성 -전략 5. 연계·협력 기반의 관광효과 확산 -전략 6. 관광개발 제도·관리체계 혁신
	• 권역별 전략 및 추진계획 -수도·강원·제주권 : 글로벌 K관광 선도지대로 육성 ·수도권 : 글로벌 관광허브, 한류 중심지역 ·강원권 : 세계인이 다시 찾는 생태웰빙휴양 관광지역 ·제주권 : 미래지향적인 청정자연유산관광 중심지역 -충청권 : 과학기술기반의 백재·중원문화 관광지대 -전라권 : 다도해·새만금을 품은 문화예술 관광지대 -대경권 : 유교문화에 기반한 역사문화 생태관광지대 -부울경권 : 산업기반 해양레저·문화관광지대	• 권역별 전략 및 추진계획 -수도권 : K-컬처를 세계와 지역으로 잇는 대한민국 관광관문 -중부권 : 과학·문화와 내륙·서해를 잇는 대한민국 관광중심축 -서남권 : 자연 속에 의향·예향·미향으로 머무는 글로벌 관광특별시 -대경권 : 천년의 유산과 미래혁신을 잇는 글로벌 관광 중심 -동남권 : 세계로 열린 해양·산업·생태 융합관광 중심 -강원권 : 다양한 강원다움으로 글로벌 관광도시 도약 -전북권 : 전북의 맛과 쉼, 세계가 찾는 전북관광 -제주권 : 도민과 여행자 모두가 행복한 글로벌 여행지 제주

A decorative graphic consisting of a vertical line and a horizontal line intersecting. The vertical line is on the left side of the page, and the horizontal line is positioned below the chapter title. Both lines have a gradient from dark grey to light grey.

제 2 장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2.1 평가항목별 환경보전목표

2.2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제2장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2.1 평가항목별 환경보전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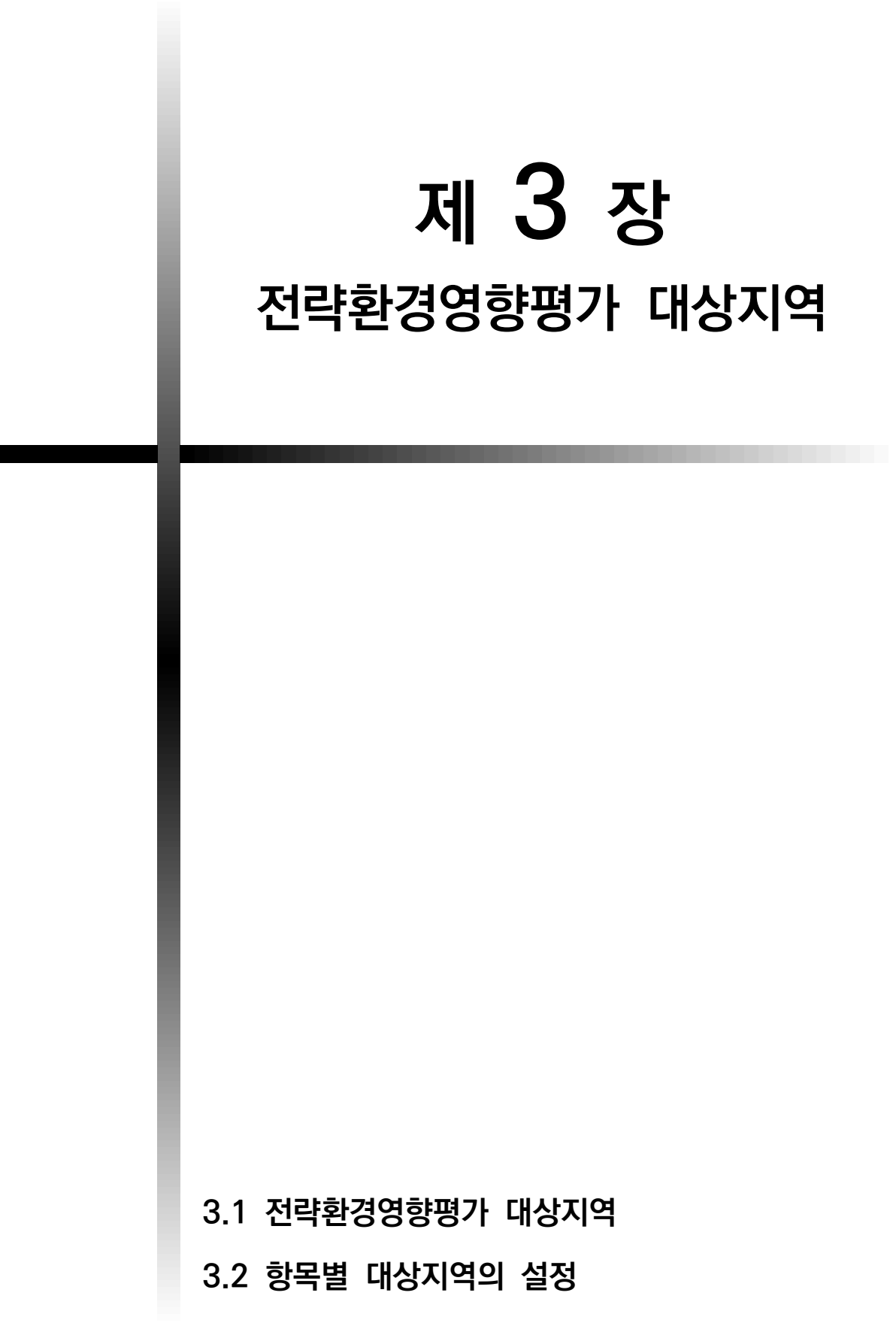
- 환경보전목표 설정 항목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 및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2025. 4,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시된 사항을 토대로 설정함
 - 국가환경종합계획, 자연·대기·수질환경·탄소중립 등 국가의 분야별 환경계획의 주요 목표 또는 지표
 - 시·도환경계획, 시·군·구환경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 등 해당 지역 환경보전계획의 주요 목표 또는 지표
 - 생태면적률, 환경생태계획 등 국내·외에서 적용·활용 중인 다양한 계획기법 및 정책 목표
 - 국제협약 또는 국제기구 등에서 설정한 기준
 - 환경기준, 생태·자연도, 오염총량 기준 등 관계 법률에서 설정한 기준
- 환경보전목표는 현재의 과학과 기술로 달성가능하면서 경제적으로 수용가능하게 계획

2.2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평가항목별 환경보전목표 설정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 제7조의2 및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2025. 4, 환경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항목별로 설정함
- 한편, 환경보전목표의 설정은 해당 계획이 추구 또는 이루고자 하는 환경보전목표를 평가 분야 또는 항목별로 정량적으로 설정하되, 본 계획은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의 수정계획으로 사업특성상 정량적으로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성적으로 설정·제시함

〈표 2-1〉 평가항목별 환경보전목표 설정

평가항목		환경보전목표	설정사유
가. 환경보전 계획과의 부합성	국가환경정책	◦ 본 정책계획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환경계획 및 시책과 부합하는지 검토	◦ 국가환경정책과의 부합성 검토
	국제환경동향·협약·규범	◦ 본 정책계획이 국제적 환경관리 협약·조약·규범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였는지 여부를 검토	◦ 국제환경동향·협약·규범등과의 부합성 검토
나. 계획의 연계성· 일관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국토종합계획,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에 부합하는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의 수정계획 수립	◦ 상위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계획의 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 계획목표와 계획의 세부내용이 일관성 있게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검토	◦ 계획목표 및 내용의 일관성 검토
다. 계획의 적정성· 지속성	공간계획의 적정성	◦ 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여건 변화와 관련 장·단기적 보전대책을 감안하여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검토	◦ 공간계획의 적정성 검토
	수요·공급 규모의 적정성	◦ 수요 및 공급 규모 등과 연계한 환경 계획 수립	◦ 효율적인 수요·공급 적정성 검토
	환경용량의 지속성	◦ 환경용량 및 환경지표 등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검토	◦ 환경계획 타당성 검토

A decorative graphic consisting of a vertical line and a horizontal line intersecting. The vertical line is on the left side of the page, and the horizontal line is positioned below the chapter title. Both lines have a gradient effect, transitioning from dark grey to light grey.

제 3 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3.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3.2 항목별 대상지역의 설정

제3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3.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본 계획은 대한민국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분야 최상위 장기 법정계획으로 대한민국의 효율적인 관광개발을 위해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관광의 확충 및 관광계획 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 임
- 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관광진흥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 전역을 대상지역으로 설정함

3.2 항목별 대상지역의 설정

- 관광개발기본계획의 특성에 따라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항목별 대상지역을 대한민국 전역으로 설정함

〈표 3-1〉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별 대상지역 설정

구 분	세부 평가항목	평가대상지역
가)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1) 국가환경정책	○ 본 정책계획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환경계획 및 시책과의 부합여부 검토	대한민국 전역
(2) 국제환경 동향·협약·규범	○ 본 정책계획이 국제적 환경관리 협약·조약·규범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였는지 여부 검토	대한민국 전역
나)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1)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상위 행정계획 및 다른 행정계획과의 부합 여부 파악	대한민국 전역
(2) 계획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 계획목표와 계획의 세부내용이 일관성 있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검토	대한민국 전역
다)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1) 공간계획의 적정성	○ 각종 보호구역의 분포 여부 검토	대한민국 전역
(2) 수요·공급 규모의 적정성	○ 수요전망, 수요 및 공급규모 등과 연계하여 환경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었는지 검토	대한민국 전역
(3) 환경용량의 지속성	○ 환경용량 및 환경지표 등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검토	대한민국 전역

제 4 장

토지이용구상안



제4장 토지이용구상안

4.1 정책계획(관광개발기본계획)의 토지이용구상안

- 본 계획은 대한민국 전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정책계획의 일환인 관광개발기본 계획으로 구체적인 입지계획이 없으므로 토지이용 구상이 불가능하여 토지이용 구상안을 설정하지 않음

A decorative graphic consisting of a vertical line and a horizontal line intersecting at the center. The vertical line is on the left side of the page, and the horizontal line is across the middle. Both lines have a gradient from black to light gray.

제 5 장

대안의 설정

5.1 대안의 종류 설정

5.2 대안의 비교·검토

제5장 대안의 설정

5.1 대안의 종류 설정

5.1.1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

-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23,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 및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2025. 4, 환경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안의 종류 및 설정방법에 따라 대안의 종류 및 방법을 선정하였음
- 관광개발기본계획에 따른 대안의 종류 선정은 계획비교, 수단·방법에 대해 시행하였으며, 본 계획은 정책계획으로 현재단계에서 수요·공급, 입지, 시기·순서 등에 대한 계획수립이 어려워 대안 설정에서는 제외함

〈표 5-1〉 대안의 종류 및 설정

대안유형	대안 설정 방법	선정여부
계획비교	◦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Action)을 대안으로 선정	◎
수단과 방법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
수요와 공급	◦ 정책에 관한 수요예측을 토대로 수요와 공급 측면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설정	-
시기와 순서	◦ 정책의 시행 시기 및 정책 수요의 충족을 위한 단계별 충족 방안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설정	-
입 지	◦ 공간구상 및 전략, 입지, 토지이용계획 등에 대한 대안 설정	-
기 타	◦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

5.2 대안의 비교·검토

5.2.1 계획 비교

- 계획 비교에 대한 대안은 본 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Action)와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No Action)를 대안으로 선정하여 비교·검토한 결과 대안1(Action)을 선정함

〈표 5-2〉 계획 비교에 따른 대안 검토

대안비교	대안 1안 계획수립시(Action)	대안 2안 계획 미수립시(No Action)
계획비교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장 점	○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 확보) 기존 관광 자원의 재해석·고도화와 콘텐츠 융복합을 통한 관광매력 강화 ○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이용·관리) 기후 위기 대응과 노후·유휴 관광자원 재생 등 지속가능한 이용·관리 확대 ○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 이동·체류 전 과정의 편의성과 관광약자의 접근성·안전 강화 ○ (지역관광 생태계) 지역주체 참여와 지역 산업 연계를 통한 자생적 관광생태계 육성 ○ (관광효과 확산) 광역·초광역 연계협력으로 관광객의 이동·체류·소비 및 파급효과 확산 ○ 계획부터 운영·관리까지 전 주기를 연계한 관광개발 제도·추진체계 개선	○ 관광자원 영역 확장으로 다양한 신규 관광 자원 창출 ○ 대표 문화콘텐츠의 국제관광 경쟁력 제고 ○ (미래)기술과 희소가치가 결합한 미래형 관광자원 발굴 ○ (개인별)관광시장 트렌드를 반영한 세밀한 관광개발 ○ (정부·지자체)정부와 지자체의 연계 관광 개발 추진 ○ (중앙부처)관광다양성 확보를 위한 부처간 협력 강화 ○ (국제)남북 및 동북아 연계 관광자원 개발 ○ 융복합 관광콘텐츠 발굴 및 확대 ○ 다양한 자원과 기술이 결합되면서 관광 자원 범위가 확장
단 점	-	○ 2021년(코로나19 시기)에 수립되어 엔데믹 이후의 관광수요와 새로운 관광행태 반영에 한계 ○ 정부 교체에 따른 국정과제와 5급3특 등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 반영이 어려움
선 정 안	◎ (선정)	-

5.2.2 수단과 방법

- 본 계획 수립 과정에서 검토되었던 권역 설정의 대안으로서 8대 국가전략 관광권 (5대 초광역관광권, 3대 특별관광권), 다핵구조의 중층적 관광권(5개 대권+17개 시·도), 16개 시·도 기반 지역자율 관광협력권(관광권 설정, 개방) 3개 대안의 설정안을 비교하였음

〈표 5-3〉 수단·방법 대안의 비교·검토

평가영역	대안1 (8대 국가전략 관광권 : 5대 초광역관광권, 3대 특별관광권)	대안2 (다핵구조의 중층적 관광권 : 5개 대권+17개 시·도)	대안3 (16개 시·도 기반 지역자율 관광협력권 : 관광권 설정, 개방)
공간구조			
주요내용	○ 현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에 따른 국토공간구조를 관광권역 설정의 기본골격으로 반영하여 8대 국가전략 관광권 설정	○ 다핵구조의 중층적 관광권역은 5개 대권과 17개 시·도가 중첩된 공간이며, 관광단위별 정책수요를 반영한 권역	○ 지역자율 관광협력권은 16개 시·도 기반으로 지역의 필요에 따라 지역이 주도적으로 협력권을 설정
장점	○ [균형발전] 5극은 대도시와 광역교통망을 중심으로 권역별 관광거점을 육성 및 관광수요 확산, 3특은 특별자치도의 제도적 특성과 고유 관광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발전 체계 구축 ○ [정합성 확보]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국토공간구조를 관광 분야에 반영하여 국가 공간정책과 관광개발 정책 간 일관성 확보	○ [협력상생] 국가적 차원의 지역간 연계사업의 체계적인 발굴과 지속적인 추진 가능 ○ [통합관리] 편협, 편중, 단절을 극복할 수 있는 자원의 통합적 관리 가능 ○ [관광수요] 관광객 이동수요 반영	○ [가변성] 대권 설정 원칙만 제시, 지방분권 및 미래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의 유연한 대응 ○ [확장성] 다양한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한 관광공간 창출 ○ [실천성] 행정구역 중심의 집행력 제고로 신속한 의사결정 및 실행계획 추진 가능

〈표 계속〉 수단·방법 대안의 비교·검토

평가영역	대안1 (8대 국가전략 관광권 : 5대 초광역관광권, 3대 특별관광권)	대안2 (다핵구조의 중층적 관광권 : 5개 대권+17개 시·도)	대안3 (16개 시·도 기반 지역자율 관광협력권 : 관광권 설정, 개방)
단점	권역 간 기능과 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협력·조정체계 구축 필요	시·도 통합형 보다 거버넌스 운영에 대한 상호간 이해 부족, 권역 내 중심지역으로의 관광수요와 투자가 집중될 가능성 우려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관광 행정 서비스의 권역간 격차 발생 - 인구감소 및 저성장위기로 관광경쟁력 저하 우려 - 연계협력, 관광이동수요 반영과 협의도출을 위한 별도 지원 필요
선정	◎	-	-
선정 사유	- 대안 1은 정부의 국가균형성장전략인 5극3특의 국토공간구조와 정합성 확보, 관광자원·교통망·관광객 이동 및 시·도 간 정책협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반영 5대 초광역관광권은 복수 시·도의 관광자원과 거점도시, 광역교통망 및 관광콘텐츠를 기능적으로 연계하여 개별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공동 관광루트와 광역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공간단위로 설정 가능 - 강원·전북·제주의 3대 특별관광권은 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자율성과 고유한 자연·문화 환경, 독립적인 관광시장 및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전략공간으로 설정 가능 8대 국가전략 관광권은 기존 5개 대권의 광범위한 공간 설정과 권역 내부의 이질성을 보완하고, 변화된 국가공간전략을 관광개발정책에 반영 가능		

제 6 장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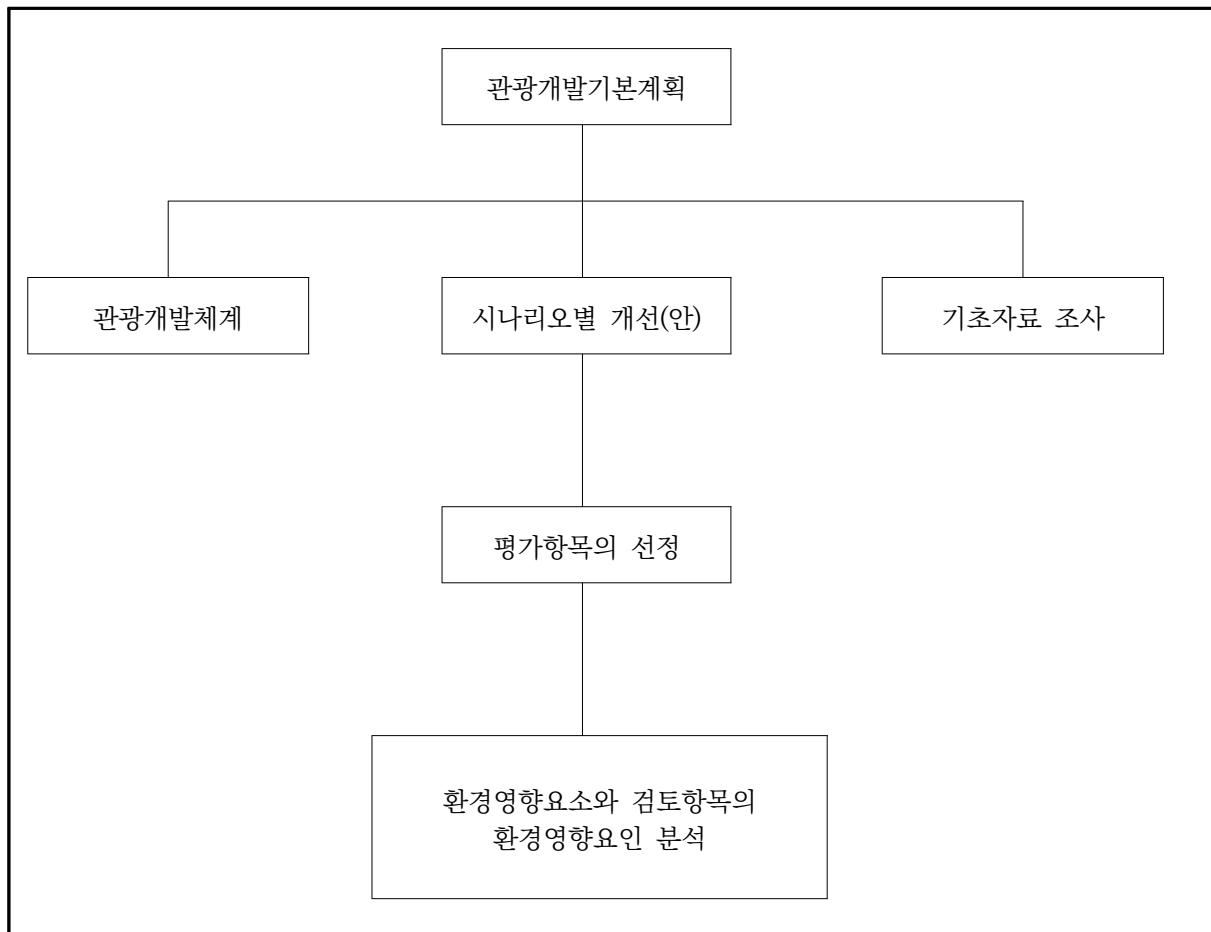
6.1 평가항목의 설정

제6장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 본 관광개발기본계획은 대한민국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분야 최상위 장기 법정계획으로 10년 단위로 관광개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관광시설의 확충 및 관광개발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임
- 따라서 평가항목 등은 관광개발체계의 지침이 되는 정책계획임을 고려하여 국가시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설정하도록 하였음

6.1 평가항목의 설정

- 평가항목 설정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계획의 적정성·지속성을 평가항목으로 설정하였음
- 또한, 세부적인 평가항목 설정은 시나리오별 개선사항(안)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고려하여 평가항목을 설정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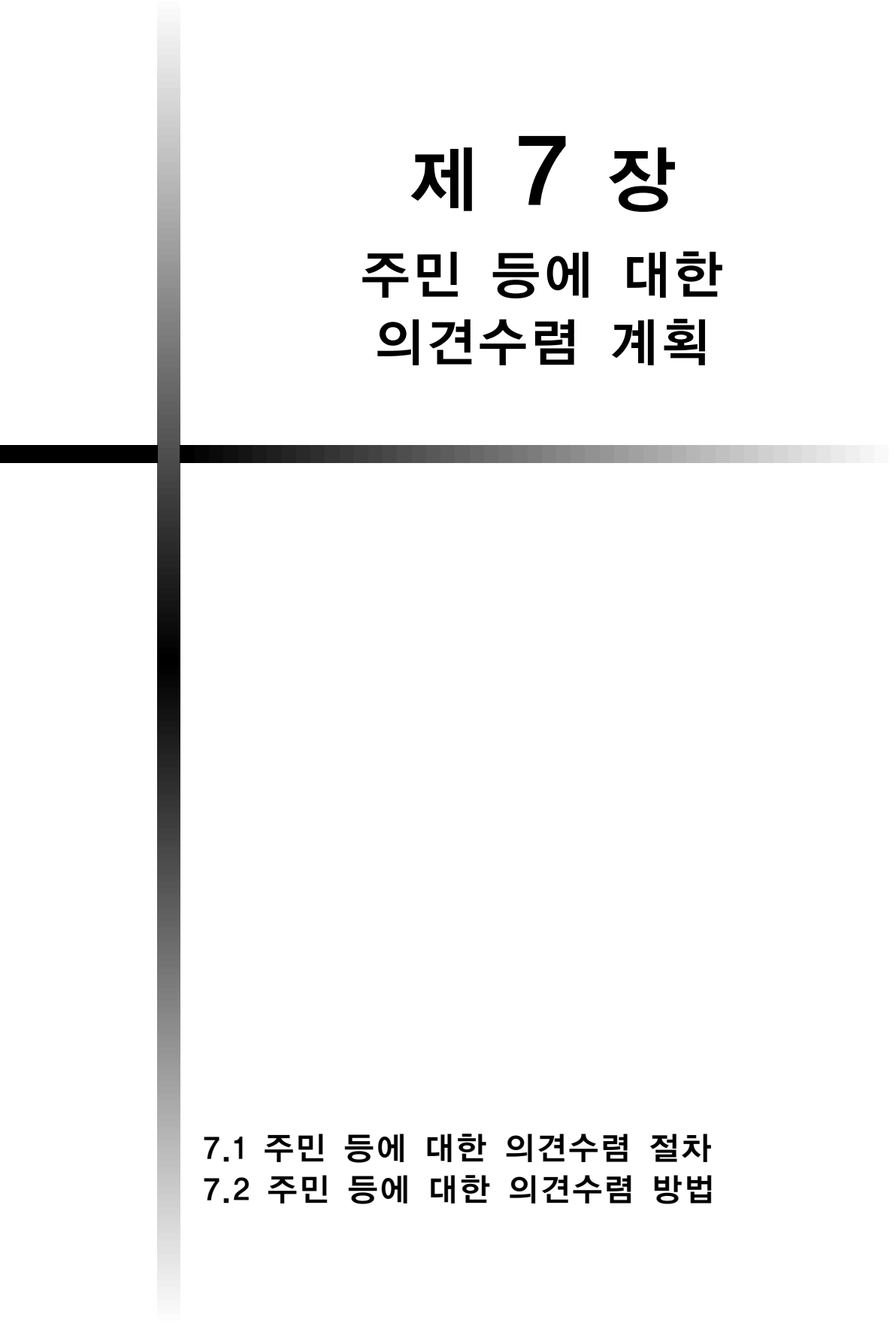
(그림 6-1) 평가항목 설정 흐름도

6.1.1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설정

- 평가항목 설정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을 참조하고 관광개발기본계획의 성격과 목적 그리고 시나리오별 개선(안) 내용을 고려하여 평가항목을 설정하였음

〈표 6-1〉 전략환경영향평가 정책계획 평가항목 설정

평가항목	평가방법	평가범위
가)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1) 국가 환경정책	◦ 본 정책계획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환경계획 및 시책과의 부합여부 검토 -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 제4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2021~2040) - 제2차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2020~2040) -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 제4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2026~2035) - 2050 탄소중립 전략	대한민국 전역
(2) 국제환경 동향·협약·규범	◦ 본 정책계획이 국제적 환경관련 협약·조약·규범 등을 고려하여 수립되었는지 여부 검토 - 기후변화협약 - 생물다양성협약	대한민국 전역
나)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1)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상위 행정계획 및 다른 행정계획과의 부합여부 파악 - 제5차 국토종합계획 -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2026~2030) - 제2차 산촌진흥기본계획(2018~2027) - 제2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2019~2028) - 생태관광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2021~2030) -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6~2030)	대한민국 전역
(2) 계획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 계획목표와 계획의 세부내용이 일관성 있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검토	대한민국 전역
다)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1) 공간계획의 적정성	◦ 각종 보호구역의 분포 여부 검토	대한민국 전역
(2) 수요 공급 규모의 적정성	◦ 수요전망, 수요 및 공급규모 등과 연계하여 환경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었는지 검토	대한민국 전역
(3) 환경용량의 지속성	◦ 환경용량 및 환경지표 등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검토	대한민국 전역

A decorative graphic consisting of a vertical line and a horizontal line intersecting. The vertical line is on the left side of the page, and the horizontal line is positioned across the middle. Both lines have a gradient effect, transitioning from dark grey to light grey.

제 7 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7.1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 7.2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방법

제7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7.1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 본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안) 2027~2031”은 정책계획으로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에 의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됨
- 정책계획에 의한 의견수렴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5조의2에 따라 정책계획의 의견수렴은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실시할 계획임

7.2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방법

- 행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7조에 의거하여 정책등안의 취지, 주요 내용 등을 관보·공보나 인터넷·신문·방송 등을 통해 공고할 계획임
- 또한, 행정예고의 방법, 의견제출 및 처리, 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은 제외),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5조제1항을 준용함

제 8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과

8.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8.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제8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8.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8.1.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실시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1항에 의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환경보전목표 설정, 대안,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을 결정함

8.1.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에 의거하여 심의위원을 구성하였음
 - 심의위원 : 8명(위원장 포함)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기간 : 2026.09.22. ~ 2026.10.02

〈표 8-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

구 분	성 명	소 속	직위 및 직책	비 고
위 원 장	이 ○ ○	문화체육관광부	과 장	-
심의위원	정 ○ ○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사무관	-
	박 ○ ○	서울시립대	교수	-
	주 ○ ○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
	오 ○ ○	충청북도청	주무관	-
	정 ○ ○	원주지방환경청	주무관	위원변경 (권○○→정○○)
	홍 ○ ○	청주시민	-	-
	고 ○ ○	민 간	차 장	-



문화체육관광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평가준비서 검토
제목 토의건 회신 요청

1. 관련근거

-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9조, 시행령 제4조
- 나. 문화체육관광부 지역관광개발과-6598(2026.8.19.)호

2. 우리 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2027~2031) 수립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협의회 구성 * 법적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제2항의 각 호

연번	위원 성명	위원 직위(급)	위원 소속	비고*
1	이	과장 (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2호
2	정	행정사무관	기후에너지환경부	1호
3	브	교수	서울시립대	3호
4	주	연구위원	한국환경연구원	3의2호
5	오	주무관	충청북도청	4호
6	권	주무관	원주지방환경청	4의2호
7	홍	-	청주시민	5호 가목
8	고	차장	(주)	5호 나목

3. 아울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와 관련하여, 사전검토 자료를 송부하오니 검토의견을 '26.10.2.(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서식) 1부.
2.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1부. 끝.

문서관리카드 1/2

(그림 8-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공문)(1/2)

8.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 (계획명 :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 ☐ 총괄의견 ○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2027~2031)에 대한 해당 평가준비서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대상지역의 설정, 토지이용 구상,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이 적절하게 설정됨. ☐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 ※ 평가준비서의 내용에 이견이 없는 경우 : 의견없음에 “√” 표시 ※ 평가준비서의 내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 : 수정의견에 “√” 표시하고, 향후 평가협의회 심의·의결을 위한 수정의견 및 그 사유를 작성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의견없음(√), 수정의견()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수정의견() 3.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없음(√), 수정의견() 4. 대안의 설정 : 의견없음(√), 수정의견() 5.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 의견없음(√), 수정의견() 6. 기 타 ○ 23p. 1.6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22~2031)의 비전·목표·전략 및 과제는 문제부 기 발표 (“21.12.30.” 내용으로 수정하여 반영 필요 2026. 9. 30. 심의위원 : 이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 (계획명 :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 ☐ 총괄의견 ○ 동 계획은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22~2031년)에 대해 변화된 관광여건과 동향 등을 고려하여 수정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 ☐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의견없음(√), 수정의견()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수정의견() 3.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없음(√), 수정의견() 4. 대안의 설정 : 의견없음(), 수정의견(√) ○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과 달라진 전국의 관광 수요와 공급사항을 고려하여 “수요와 공급”에 대한 대안도 설정하여 비교·제시 5.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 의견없음(), 수정의견(√) ○ 동 계획은 정책계획으로서 관광개발 분야의 최상위계획으로, 제8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및 향후 관광 개발사업의 입지선정 및 사업추진시의 기본방향·지침으로 적용될 것이므로, － 급히 수정계획에 포함된 6대 전략과 권역별 전략·추진계획이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수립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부평가항목별 검토를 위한 예측분석기법 및 근거자료를 함께 상세히 제시 ○ 항목별 조사 범위 및 방법은 최신 상위계획 및 연안계획에 대해 문헌조사를 통해서 작성 6. 기 타 ○ “환경영향평가법”, 제15조2(정책계획의 의견 수렴)에 따른 행정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필요 2026. 10. 2. 심의위원 : 정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 (계획명 :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 ☐ 총괄의견 ○ 본 계획은 전국을 대상으로 관광개발의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이므로 관광권별 환경적 특성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하위계획의 수립 원칙에 반영하는 데 평가의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 본 계획은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 관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인원을 위해 생물다양성 영향과 권역별 기후위험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하위계획의 입지·관리 원칙에 반영할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의견없음(), 수정의견(V) ○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 절차 중심의 목표에 더하여, 관광개발계획에 적용할 실질적인 환경보전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환경민감지역의 훼손 회피, 기존 관광자원의 우선 활용, 관광객 집중에 따른 환경부하 관리, 기후위험을 고려한 안전한 이용·관리 등을 목표로 설정하고, 자료가 확보되는 경우 판단 가능한 지표를 함께 제시할 것을 제안함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수정의견(V) ○ 대한민국 전역을 평가 대상지역으로 설정하는 데 동의함, 다만 실제 분석에서는 계획의 8대 국가전략 관광권을 기본 단위로 삼고, 연안·도시, 산지, 하천·습지, 도시 등 환경특성이 다른 지역을 구분하여 검토할 것을 제안함 3.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없음(V), 수정의견() 4. 대안의 설정 : 의견없음(V), 수정의견() 5.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 의견없음(), 수정의견(V) ○ 공간계획의 작성성: 8대 관광권별 보호지역, 주요 생태축 및 환경민감지역의 분포를 검토하고, 하위계획에서 적용할 훼손 회피·기존 자원 활용 원칙 제시 ○ 수요·공급 규모의 작성성: 연간 관광수요뿐 아니라 계절별·지역별 계절, 기존 관광시설의 활용 수준과 신규 공급 필요성 검토 ○ 관광지의 안전성과 지속가능성: 관광객 집중에 따른 교통·폐기물을 이용·생태계 교란 등 주요 부담과 관리방안, 폭염·집중호우·집수·산불 등 권역별 주요 기후위험을 파악하고, 하위계획의 입지 및 운영·관리 원칙에 반영하는 방법 검토 2026. 9. 29. 심의위원 : 박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 (계획명 :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 ☐ 총괄의견 ○ 본 계획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중심으로 환경보전목표를 수립하고 5대 초광역권인 광권, 3대 특별관광권의 권역별 개발방향과 상위 환경계획의 생태축과 공간환경전략과의 상충 여부 및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의견없음(), 수정의견(○) ○ 환경보전목표는 계획의 적정성·지속성을 중심으로 설정되되 계획으로 인해 예상되는 환경영향에 대하여 이를 다루고 있는 환경 관련 상위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환경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수정의견() ○ 의견없음 3.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없음(), 수정의견() ○ 의견없음 4. 대안의 설정 : 의견없음(), 수정의견(○) ○ 수단·방법의 대안의 평가는 본 계획에서 수립하고 있는 목표와 6대전략, 권역별 전략 및 추진계획,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계획을 지표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5.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 의견없음(), 수정의견(○) ○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본 계획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과 자·간접으로 연관이 있는 환경 관련 계획을 설정하고, 그 환경 관련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와 추진전략이 급히 수정계획과 부합되는 지의 여부를 검토 ○ 공간계획의 적정성: 5대 초광역권관광권, 3대 특별관광권의 권역별 개발방향과 자연환경보전계획의 3대 핵심 생태축, 국가환경보전계획의 권역별 공간환경전략과의 상충 여부 및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향 수립 필요 ○ 환경용량의 적정성: 오버투어리즘 관광지의 폐기를 발생과 지역주민과의 갈등 등에 대한 환경자·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책방향 수립 필요, 또한 관광시설의 탄소중립을 위한 전기·수소 활용 확대와 에너지 효율 향상, 순환경제 확대 등의 기본방향 수립 필요 6. 기 타 ○ 의견없음 2026. 10. 01. 심의위원 : 주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 (계획명 :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 ☐ 총괄의견 ○ 본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는 적절하게 수립된 것으로 판단되며 관광개발계획의 최상위 법정계획임을 고려하여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의견없음(✓), 수정의견()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수정의견() 3.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없음(✓), 수정의견() 4. 대안의 설정 : 의견없음(✓), 수정의견() 5.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 의견없음(✓), 수정의견() 6. 기 타 ☐ 없음 2026. 10. 1. 심의위원 : 오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 (계획명 :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 ☐ 총괄의견 ○ 전국을 범위로 하는 정책계획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광개발의 양적 확대보다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관광개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금회 정책계획에서 환경보전 원칙 및 입지·개발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향후 지역별 관광개발계획 및 개별 관광개발사업 추진 시 환경의 고려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관리 방향과 기준을 설정하여야 함. ☐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의견없음(), 수정의견(✓) ○ 강원·충북 북부지역은 백두대간 및 한강 상류수계가 위치한 지역적 특성이 있으므로 산악·수변 지역 관광개발계획 수립 시, 산림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경보전 방향을 설정하여야 함. ○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관광지역, 국립공원 등 생태적으로 우수하고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은 보전·관리 중심의 관광정책을 우선 수립하고, 주변 지역은 자연·문화자원과 연계한 지역형 관광 개발을 유도하는 등 지역별 차등화된 개발목표를 설정하여야 함.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수정의견() 3.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없음(✓), 수정의견() 4. 대안의 설정 : 의견없음(✓), 수정의견() 5.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 의견없음(), 수정의견(✓) ○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10호)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함. 6. 기 타 ☐ 의견 없음 2026. 10. 1. 심의위원 : 정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 (계획명 :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 ☐ 총괄의견 ○ 국가의 중장기 관광개발 법정계획으로 전라북도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의견없음(✓), 수정의견()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수정의견() 3.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없음(✓), 수정의견() 4. 대안의 설정 : 의견없음(✓), 수정의견() 5.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 의견없음(✓), 수정의견() 6. 기 타 ☐ 있음 2026. 10. 1. 심의위원 : 홍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 (계획명 :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 ☐ 총괄의견 ○ 본 계획은 신규 관광시설의 부분별한 조성을 지양하고 기존 관광자원의 내실 있는 활용 및 관리, 지속가능한 관광을 지향하고 있어 계획의 기본 방향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 ※ 평가준비서의 내용에 이견이 없는 경우 : 의견없음에 “✓” 표시 ※ 평가준비서의 내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 : 수정의견에 “✓” 표시하고, 향후 평가협의와 심의·의결을 위한 수정의견 및 그 사유를 작성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의견없음(✓), 수정의견() ☐ 의견없음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수정의견() ☐ 관광개발기본계획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계획이므로 대상지역을 대한민국 전역으로 설정한 것은 타당함 3.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없음(✓), 수정의견() ☐ 구체적인 입지계획이 없는 정책계획의 특성상 토지이용 구상안을 설정하지 않은 것은 타당함 4. 대안의 설정 : 의견없음(✓), 수정의견() ☐ 의견없음 5.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 의견없음(), 수정의견(✓) ○ “단소중립기본법” 등에 따른 관련계획과의 부합성 및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와 함께 관광개발과 연관된 자연환경분야 관련 계획을 추가로 검토·제시하여야 함 6. 기 타 ☐ 의견없음 2026. 9. 29. 심의위원 : 고